

- June–September 2011 Consultation Period
- Who may be affected this time?
- What are the proposed changes?
 1. Tier 1
 2. Tier 2 (General)
 3. Tier 5 Temporary Workers
 4. Overseas Domestic Workers
 5. Getting employers involved

3HR focus

영국정부는 지난 6월 이민자수 대폭삭감정책의 일환으로 ‘고용관련 영국정책, Tier 5, 해외 가사 노동자 (Employment-related settlement, Tier 5 and overseas domestic workers)’ 라는 제목의 컨설팅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컨설팅페이퍼는 법개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3HR 발간 7월 뉴스레터에서 본 컨설팅페이퍼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의견수렴 기간: June – September 2011

4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친후 확정된 이민법개정내용이 발표되며 특히 일부 내용은 2011년 4월부터 발효된 대대적 이민법 개정내용에 적용되는 이들중 특정 카테고리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영향받는 대상

Tier 1, Tier 2, Tier 5 에 해당하는 이민자와 동반가족, 그리고 해외가사노동자 (overseas domestic workers: 개인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유모 등) 와 동반가족이 잠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될 주요 대상입니다. 영국의 청년실업자수가 895,000명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이민자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과 동시에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발표될 이민법 개정 내용은 적용대상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무 또한 한층 강화되리라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1. Tier 1

- *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 (investors) 와 사업가 (entrepreneurs) 비자소지자에게만 제한없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 * 연간 1,000명으로 제한되는 2011년 4월에 신규 도입된 예술, 과학, 인문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이민자 (exceptional talent) 카테고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체류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영주권 신청자격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 Tier 2 (General)

2011년 4월부터 개정안이 도입된 Tier 2 (ICT) 비자에 이어 Tier 2 (General) 비자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대대적으로 제한되며 4월 이후 신청/입국한 Tier 2 (General) 비자소지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이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 * Tier 2 (General)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현재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이러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일부에게만 주어질 예정입니다.
- * Tier 2 (General) 항목에서 직업, 소득, 학력, 부족직업군 해당여부 등에 기반해 가장 뛰어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 (the exceptionally talented Tier 2 migrants) 을 도입해 이들에게만 초기 3년후 추가 2년 거주연장을 거쳐 총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카테고리로 연장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초기 3년과 추가 2년, 즉 총 5년간의 거주를 끝으로 영국을 떠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Please turn over

- * 현재 Tier 2 (General) 비자소지자의 성인동반가족의 경우 체류 5년후 영주권 신청시에만 영어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언급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카테고리에 해당되어 추가로 2년 체류연장신청을 할 경우 이 경우에도 영어테스트 통과요건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수준은 배우자 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인 A1 으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요하는 수준입니다.

Tier 2 (General) 비자 소지자가 초기 3년간 체류후 추가 2년 체류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야 향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항목신청 자격 해당여부가 결정될 경우 신청자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영국체류시 가족동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Tier 5 Temporary workers

- * 현재 Tier 5 Temporary workers 비자 소지자는 비자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Tier 5 International Agreements 의 경우) 체류 가능하나 Tier 5 Temporary workers 전항목 비자 소지자의 최대 체류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비자만료시 영국을 떠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 * 현재 Tier 5 Temporary workers 비자 소지자는 가족을 동반할수 있으며 동반가족의 취업에 제한이 없으나 위 안건이 도입될 경우 가족동반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상기 개정안은 '임시 노동력' (Temporary workers) 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도입한 본 항목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국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체류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대폭 제한되고 기간 만료시 비자연장이 금지될 경우 비자 소지자의 가능한 근무기간은 물론 가족동반여부 또는 동반 배우자의 영국내 취업자격 여부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Overseas Domestic Workers

- * 개인 고용주와 함께 영국에 입국해 고용주의 자택에서 요리사, 유모, 집사 등으로 근무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현재는 5년체류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자 (visitor) 비자와 동일하게 다루어 허용되는 체류기간을 최대 6개월로 대폭 삭감하고 비자 연장이 금지됩니다.
- * 현재 가족동반이 허용되며 5년 체류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 역시 허용되고 있으나, 위 방안이 도입될 경우 가족동반금지 또는 가족동반 허용시에도 동반가족의 영국내 취업금지와 더불어 영주권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5. Getting Employers involved

현재 Tier 2 (General) 비자소지자가 비자연장/영주권 신청시 고용주는 해당 신청인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기존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아래와 같은 추가의무도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 Tier 2 (General) 비자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는 EEA 인력 (영국에서 합법적 근무가 가능한 모든이) 중 해당 신청자를 대체할 인력이 없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신청비용 및 스폰서의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 해당 피고용인이 초기 3년 체류후 향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루트로의 연장비자 신청시 고용주는 해당 신청자의 고용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 현 고용주가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를 확보하지 못할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며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영국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비 EEA 이민자의 채용을 지양하고 EEA 인력을 고용해 부족한 자격/스킬등이 있을경우 트레이닝 등을 통해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이션 페이지에 제안된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민 노동력을 이용하는 영국내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각국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등의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비즈니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변경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의견수렴 마감일인 2011년 9월 9일까지 영국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ukba.homeoffice.gov.uk/work-routes-consultation>) 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oyoung Lee LLB (Hons)
Head of Korean Services
Tel: +44(0)20 7194 8150
Email: soyoung.lee@3hrplc.co.uk

May Cheung LLB (Hons)
Immigration Consultant
Tel: +44(0)20 7194 8151
Email: may.cheung@3hrplc.co.uk



Authorised to provide immigration advice or services
by Office of the Immigration Services Commissioner.
Ref. No. F201000126